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72

발의연월일: 2021. 3. 22.

발 의 자:조승래·홍정민·김민석

박홍근 • 박영순 • 강병원

한준호 · 김진표 · 기동민

서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함)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, 민간위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 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,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, 심의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에만 머무르고 있어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.

또한,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·이용 촉진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,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그 이름을 변경하여 정

책 관련 심의·의결을 하도록 하고,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,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(안 제5조, 제6조 및 제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"을 "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"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"(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)"를 "(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심의하기"를 "심의·의결하기"로, "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"를 "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(이하 "삼의위원회"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심의위원회"를 "주소정책위원회"로, "심의한다"를 "심의·의결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심의위원회"를 "주소정책위원회"로, "이명"을 "주소정책위원회"로, "기명한다"를 "지명하되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심의위원회"를 "주소정책위원회"로, "지명한다"를 "지명하 되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심의위원회"를 "주소정책위원회"로 한다.

- 6.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
- 1.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

-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- 2.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
- 3.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
- 4.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- 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,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 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- 6.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9조의2(한국인터넷정보센터)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·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(이하 "인터넷정보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|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|
| ·② (생 략) | ·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| 3 |
|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| |
|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 | 인터넷주소정책위 |
|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| 원회의 심의·의결을 |
| 한다. | |
| ④ (생 략) | 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6조(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) | 제6조(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) ① |
|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 | |
| 책 등을 <u>심의하기</u> 위하여 과학 | <u>심의·의결하기</u> |
| 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<u>인터</u> | <u>ণ</u> |
| 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| 터넷주소정책위원회(이하 "주소 |
| <u>"심의위원회"라 한다)</u> 를 둔다. | <u> 정책위원회"라 한다)</u> |
|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| ② 주소정책위원회 |
| 사항을 <u>심의한다</u> . | <u>심의·의결한다</u> . |
| 1. ~ 5. (생 략)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6.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|
| | 표준화에 관한 사항 |
| <u>6.</u> (생 략) | 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 |
|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| ③ 주소정책위원회 |
| 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| <u>20명</u> |
| 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| |
| 호선한다. | |

-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 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.
- 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- 2. 판사・검사・변호사 또는 변 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자
- 3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 를 전공한 자
- 4.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- 5.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 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

| (4) <u>주소정책위원회</u> |
|--------------------|
| |
| |
| |
| |
| <u>지명하되,</u> 다 |
|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|
| 포함되어야 한다. |

- 1.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 | 1.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 - 2.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 신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
 - 3.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 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 고 있거나 있었던 자
 - 4.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 었던 자
 - 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인터 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

있었던 자

- 6.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인정하는 자
-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주소정책위원회-----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 나,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 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 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이 상 있거나 있었던 자

- 6.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 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

제9조의2(한국인터넷정보센터)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・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 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(이하 "인 터넷정보센터"라 한다)를 둔다. ② 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